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나537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재 판 경 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나5375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가단223408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1. U

2. V

3. W

4. X

5. Y

6. Z

7. AA

8. AB

9. AC

10. AD

11. AE

12. AF1) 13. AG2) 14. AH

15. AN

16. AO

17. AP

18. AQ

19. AR

20. AS

21. AT

22. AU

23. AV

24. AW

25. AX

원고, 피항소인(탈퇴)1. AY

2. AZ

3. BA

원고 12. AF의 승계참가인1. AI

원고 AY(탈퇴)의 승계참가인2. BB

원고 AZ(탈퇴)의 승계참가인3. BC

원고 AG의 승계참가인4. AJ

원고 BA(탈퇴)의 승계참가인5. BD

원고들, 원고승계참가인 AI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최영동, 고은아

피고, 항소인1. B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2. C

피고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소송대리인변호사 정인봉

변론 종결2019. 5. 2.

판결 선고2019. 6. 13.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가단223408 판결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B은,

가) 당심 별지3 표3 기재 해당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별지3 표3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나) 위 별지3 표4 기재 해당 수분양자들에게 위 별지3 표4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 피고(선정당사자) C은,

가) 위 별지3 표5 기재 해당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별지3 표5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나) 위 별지3 표6 기재 해당 수분양자들에게 위 별지3 표6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3) 선정자 D은,

가) 위 별지3 표7 기재 해당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별지3 표7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나) 위 별지3 표8 기재 해당 수분양자들에게 위 별지3 표8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원고 A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원고승계참가인 AI, BB, BC, AJ, BD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 AY, AZ, BA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3)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선정자 D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선정자 D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7. 1. 12.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자 D에게 송달된 사실, 선정자 D이 2017. 3.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경우 선정자 D으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고,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부분은 제외).

○ 제1심 판결문의 각 "피고 D"을 각 "선정자 D"으로 수정한다(다만 이하에서 피고 B, C과 선정자 D을 모두 합하여 일컬을 경우에는 편의상 '피고들'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1"은 당심 판결문의 "별지1"로, 각 "별지3"은 당심 판결문의 "별지3"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의 3면 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 중 AF, AY, AZ, AG, BA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소유하고 있던 E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K동 BE호	AF	AI(O)	2015. 12. 18.
AK동 BF호	AY	BB(O)	2018. 7. 25.
AK동 BG호	AZ	BC(O)	2019. 2. 18.
AK동 AL호	AG	AJ(O)	2018. 6. 22.
AK동 BH호	BA	BD(O)	2018. 8. 2.

]

나. 추가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대위자인 수분양자들은 그 생사가 불명할 뿐 아니라 인적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특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피보전권리와 대위 행사할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칠 주관적 범위와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며 채무자 본인이 제기할 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대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이 갖는 성격과 채무자 특정의 난이도 및 소송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특정한 정도가 위에서 든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충분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반드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채무자 개개인의 인적 사항을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상세히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7. 3. 7.자 분양처분고시에 첨부된 '아파트 동별, 호수별 및 상가분양처분조서'에 분양받은 호수와 수분양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대위 행사하는 권리는 E아파트의 각 세대 및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대지지분권에 관한 것으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수분양자들이 별도의 중복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해당호수와 수분양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들은 E아파트 BI동 BJ호 BK, BL동 BM호 BN, BL동 BO호 BP은 사망하여 피대위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이 사건의 피대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F의 청구 관련

원고 AF가 소유하고 있던 E아파트의 상가 점포를 원고승계참가인 AI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F는 피고들로부터 승계참가로 인한 소송탈퇴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E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 AF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나머지 원고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 관련

(1) 피고들의 주장

① 피고들은 임의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일인 2000. 5. 3. 또는 S(승계취득 전 소유자) 또는 선정자 D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잔금을 납부한 1997년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지 10년이 지난 2010년4) 또는 2007년 무렵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② 원고들 또는 원고들 승계참가인들이 피고들에게 구하는 지분의 계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③ BQ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처분 전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J, BR, L 토지의 소유자인 I와 1983. 3.경 위 환지처분 전 토지를 매수한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일이 있음에도 I에게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위 L 토지의 전 소유자인 N과도 비슷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L 토지에 관한 위 합의서는 실효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 당시 적법한 현금보상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위 환지처분과 1997. 3. 7.자 분양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위 환지처분 및

분양처분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우선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영등포구청장의 1997. 3. 7.자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인 1997. 3. 8. 각 전유면적의 비율에 따라 E아파트 부지로 분양되었으므로, E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997. 3. 7.자 분양처분고시에 첨부된 '6. 필지별대지소유권내역' 중 '(1) 아파트 동별, 호수별 및 상가 분양처분조서'에 따르면 위 토지 중 아파트부지 8,940.2㎡을 아파트 대지지분 7,257.3㎡와 상가 대지지분 1,682.9㎡로 나누고 이를 다시 아파트의 각 세대별 및 상가의 각 점포별 대지지분으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에게 모두 분양하였으므로, 1997. 3. 7.자 분양처분을 통해 E아파트의 각 세대 또는 점포 및 그 대지를 분양받은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전소유자인 수분양자들은 위 분양처분고시 다음날인 1997. 3. 8. 이 사건 아파트 부지면적 8,940.2㎡ 중 각 분양받은 대지면적의 비율대로 E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지분 × 원고들(또는 전소유자)가 분양받은 지분"의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지분이전을 구하고 있고, 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그 처분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는 이른바 공용환권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등 참조), 분양처분은 일단 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인바(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누1003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현금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E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환지)하는 위 분양처분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F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 AY, AZ, BA이 당심에서 탈퇴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성철

판사김세현

판사지혜선

별지

1) 피고 B은 원고승계참가인 AI이 원고 AF에 대하여 승계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2017. 8. 17.자 소송수계에 관한 의견), 피고(선정당사자) C도 이에 관하여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원고 AF의 소송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 AG는 2018. 6. 21. 원고승계참가인 AJ에게 아래에서 볼 AK동 AL호를 증여하였으나, AK동 AM호는 여전히 소유 중이므로 소송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원고승계참가인 AI이 당심에 이르러 원고 AF에게 승계참가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원고 AF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피고들은 2012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